

## 【 9 】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2. 11.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확대·흡수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사업의 범위 환지의 교부방법, 환지의 청산, 토지의 가격평정 등의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된 관계로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편 건설 제3장 농업기반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71. 1. 15]  
[조례 제261호]

개정 1982. 4.17 조례 제813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분합에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위원회)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군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심의대상)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인원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가격 및 동위사정에 관한 사항
5. 일시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노역 현품을 포함)징수에 관한 사항
8.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10. 사업이양에 관한 사항

제 5 조(경비의 부과) ①이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제 6 조(환지의 교부방법) ①환지를 교부할 때에는 지목 지적 및 등위, 토성,

## 제14번 건설 제3장 농업기반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수리, 경사등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교부할 환지의 총지적은 종전지적(권리지적)에 비례한다.

②종전의 토지 소유지적이 99.7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소유자의 승락이 있을 때에는 환율 금전으로써 정산할 수 있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될 위치로 집단 교부할 수 있다.

제7조(환지의 정산) 환지의 교부 및 이에 관한 정산은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공사가 완료된 뒤에 이를 시행한다.

제8조(정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 종전토지 평정가격에 곱한 금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9조(보상금과 구상금) ①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 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의 구상을 하여야 한다.

②토지개량사업 시설중 도로구거 기타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 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를 추산하여 보상한다.

제10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①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분전(고시전)에 있어서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②종전의 지역에 의하여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에 상당한 사용수익의 구역을 일시이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수익이 종전농지의 수익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12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농지의 소재지 번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재지 및 전평)을 지구 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 변환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14편 건설 제3장 농업기반 양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4.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8. 가옥 기타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착수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후에 지체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평정가격은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971. 1. 15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7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척 (1984. 2. 1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農漁村整備法

소관부처 : 농림부

制定 1994. 12. 22 法律第4823號  
 改正 1995. 12.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 1. 13 法律第5279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水產業生產基盤, 農漁村生活環境과 農漁村休養資源 및  
 限界農地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整備·開發하여 農水產業의 競爭力 향상과  
 農漁村生活環境改善을 속진함으로써 현대적인 農漁村建設과 國家의 均衡發展  
 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 1. 13)

1. “農漁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地域을 말한다.
2. “農漁村整備事業(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農水產業 生產基盤을  
 造成·擴充하기 위한 農業生產基盤整備 및 水產業生產基盤整備, 生活環境改善  
 을 위한 農漁村生活環境整備와 農漁村休養資源開發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  
 을 말한다.
3.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農漁村地域의 農業用水등 農漁村用水開發事業
  - 나. 耕地整理, 排水改善, 水利施設 改補修등 農業生產基盤改良事業
  - 다. 農水產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干拓·坦立·開墾등 農地擴大開發事業
  - 라. 農業主產園地造成 및 营農施設擴充事業
  - 마. 기타 農地의 開發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農業生產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으로 設置되거나 기타 農  
 地의 보전이나 農業生產에 이용되는 賯水池(農漁村用水의 賯보를 目的으로 河  
 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 말한다), 揚水場, 苔井等 地下水利用施設, 排水場, 取入狀, 用·

## 第24講 農業 第2章・農地 農業基盤整備法

한 農業基盤整備事業基本計劃에 따라 사업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한 細部設計를 실시하고,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地域의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施行計劃書를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細部設計를 실시하기 전에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第9條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 農業基盤整備事業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農漁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또는 土地所有者가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號 라의 事業은 農業協同組合도 施行할 수 있다.

第10條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의 告示등) ①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は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이 수립된 地域에 사업을 施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을 告示하고 그 施行計劃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地域내의 受惠面積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的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가 당해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裁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が 國家 또는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④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을 위한 施行計劃의 告示, 異議申請, 裁定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細部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認可

第40條 (既存建築物의 撤去등) ①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は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建築物(建築物에 달린 畜舍, 垢肥舍, 便所等 附帶施設을 포함한다)에 대해 農地로의 轉換,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撤去 또는 移轉을 권고할 수 있다.  
 ②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は 第1項중 撤去가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費用을 補償할 수 있다.

第41條 (農漁村住宅등의 分讓등) ①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は 生活環境整備事業施行에 따른 造成用地, 農漁村住宅 기타 施設物을 換地하거나 分讓 또는 貸貸할 수 있다.  
 ②造成用地, 農漁村住宅 기타 施設物의 供給方法등 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 (技術支援등) ①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으로 収益金이 발생할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整備事業에 再投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 수립과 調査·設計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企劃·技術支援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預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13>

## 第6章 農漁村 土地등의 效率的 整備를 위한 換地, 交換·分合등

第43條 (換地計劃) ①農業基盤整備事業과 生活環境整備事業(이하 “農業基盤等整備事業”이라 한다)의 施行者は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施行전의 土地에 대신하여 事業施行후의 土地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金錢으로 清算하게 하기 위한 換地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換地計劃에 있어서 换地는 종전의 土地와 상응하여야 하되,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에 따른 换地는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 集團指定하여야 한다.

## 第24條 農業 第2章 農地 農地整備法

③換地를 받을 수 있는者は登記簿상의 土地所有者로 하여야 한다.

④換地計劃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1. 土地所有者別 换地計劃 및 清算金 내역
2. 종전 및 施行후 土地 篓地別 내역
3. 换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土地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土地의 내역
4. 기타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⑤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换地는 農耕地 치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生活環境整備事業 병행시 土地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非農耕地 를 치정할 수 있다.

⑥換地로 치정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면적과 비교하여 増減이 土地所有者別로 100分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算定한 면적의 100分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千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까지 增減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⑦國公有地 또는 農地改良組合 所有土地의 土地中 法的 地目이 溝渠, 道路, 河川, 提防 또는 滋池인 土地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换地計劃區域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農耕地 所有者가 있는 경우에는 换地를 치정하지 아니하고 金錢으로 清算한다.

⑧農業基盤等整備事業의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换地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 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所有權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이 있는 경우 이와 交換될 土地에 그 所有權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의 目的이 되는 부분을 치정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第44條 (换地計劃의 認可) ①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는 農業基盤等 整備事業의 工事を 竣工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農業基盤等整備事業을 施行하는 地域에 대하여 换地計劃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②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换地計劃의 概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日以上 公告하고 그 地域안의 土地에 관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의 3분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農漁村整備法

하여는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換地를 지정하거나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金錢으로 清算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換地計劃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徵收의 방법과 時期를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從前土地에 地上權·貸借權 및 使用貸借에 의한 權利 또는 기타의 使用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가진者が 있는 경우에는 그 權利者の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號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改正 97.1.13>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換地指定

2. 農林部令이 정하는 者중 營農規模擴大를 희망하는 者의 同意가 있을 때의 換地指定. 다만, 이 경우에는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増換地 할 수 있다.

第49條 (國公有地외의 公共施設敷地 機能交換) 農地改良組合 所有土地로써 農業基盤施設등 公公用으로 이용되어 온 施設이 廢止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施設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土地는 그 廢止된 施設의 土地와 交換하며, 換地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清算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

第50條 (換地處分의 效果와 清算金) ①換地處分의 告示가 있는 경우에는 換地計劃에 의하여 교부될 換地는 換地計劃을 告示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從前土地로 보며, 그 換地計劃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지 아니한 從前土地에 존재하는 權利는 그 告示가 있은 날에 消滅된 것으로 본다.

②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換地計劃에서 정하여진 換地는 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날의 다음날에 換地를 교부받은 者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된 土地는 당해 換地計劃에 의하여 교부된 換地로 보며,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은 行政상 또는 裁判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土地에 전속하는 權利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는 그 告示된 換地計劃에 의하여 清算金을 지불하거나 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清算金은 換地認可가 있은 날부터 90日안에 清算하여야 한다.

## 第21編 農業 第2章 \*農地 農漁村整備法

⑥換地處分에 따른 清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으며, 직립 滯納處分을 행하는 農漁村復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任職員은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一時利用地의 지정) ①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は 사업에 관한 工事が 竣工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施行 地域내의 土地에 대하여 종전의 土地에 대신할 一時利用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을 한 때에는 一時利用地와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地上權·賃借權 또는 使用 賃借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一時利用地, 종전의 土地 및 使用開始日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의하여 一時利用地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第2項의 權利를 가진 者는 一時利用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使用開始日부터 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法律 또는 契約으로 정한 당해 權利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土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경우에는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第2項의 權利를 가진 者는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利用地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一時利用地에 대하여 第2項의 權利를 가진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開始日부터 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그 一時利用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⑥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⑦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収益金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50條第6項의 規定을準用 한다. 다만, 土地所有者가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을 施行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農漁村整備法

第52條 (土地價格의 評定) 종전의 土地의 價格評定은 工事着手전에, 換地로 교부할 土地의 價格評定은 工事完了후에 調査·決定한다.

第53條 (受惠者總會) ① 종전의 土地 및 事業施行후 土地의 評定價格, 等級決定, 換地區域 分割등과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決定은 당해 農業基盤等整備事業을 施行하는 地域의 受惠者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地域의 受惠者總數가 100人을 초과할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議員會의 議決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 代議員會는 受惠者總會에서 選出하는 代議員으로 구성하고, 代議員의 數는 최소 30人으로 하되, 100人을 초과하는 受惠者 每 20人마다 1人을 추가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③ 受惠者總會 및 代議員會의 구성을 관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第54條 (換地審議委員會) ①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は 換地에 따른 民願이나 利害關係者間 紛爭을 효과적으로 調停하기 위하여 換地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換地審議委員會의 구성을 관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 (換地處分에 의한 登記) ①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は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가 있을 때에는 가치없이 당해 換地處分에 관한 土地 및 建物에 관한 登記를 축탁하여야 한다.

② 農業基盤等整備事業 施行者は 換地登記를 축탁하기 위하여 이미 登記된 土地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土地所有者에 갈음하여 變更登記를 축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登記는 農業基盤等整備事業으로 인한 登記로 본다.

③ 換地處分에 隨伴된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56條 (交換·分合의 施行) ①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은 農地所有者 2人이상의 申請이 있거나 申請이 없더라도 土地所有者的 同意를 얻은 때에는 農地에 관한 權利, 그 農地의 이용에 필요한 土地에 관한 權利 및 農業基盤施設·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의 交換·分合(이하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分合을 施行하는 때에는 交換·分合計劃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